

의안번호	2217672
의 퇴 인	김윤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4.
추 계 번호	26C1635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02조의3 (기금의 위탁운용)	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03조 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	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로 하고,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어야 함 ※ (현행)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2조의3 (기금의 위탁운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3조 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(안 제102조의3)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(안 제103조)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할 경우 위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,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해당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 - (안 제102조의3)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 위탁 여부를 알 수 없고, 위탁 시 업무 범위 및 수수료 규모 등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(안 제103조)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지급할 인건비 단가를 알 수 없고, 사무국 설치를 위해 신규로 채용할 인력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103조의제9항은 사무국의 조직·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조직의 규모 및 업무 범위 등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